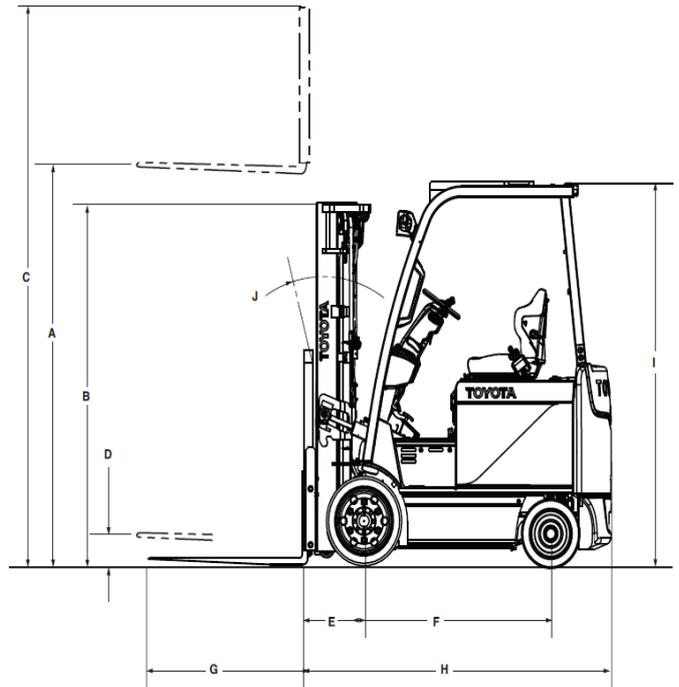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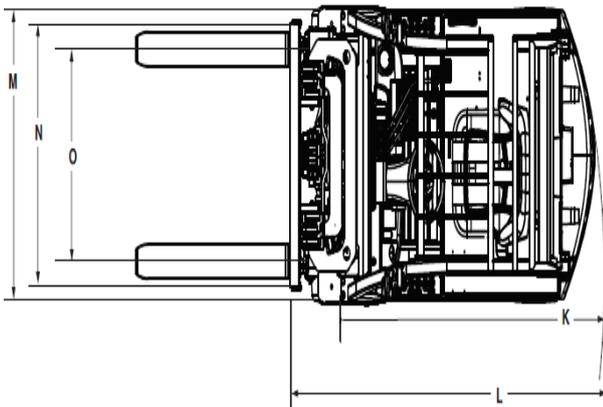


목록

지계차 8FBCU32 제원표(3단).....1
지계차8230601033_제반서류.....2

전동지게차 기본제원 (8FBCU32)

제조사		도요타(TOYOTA)	
모델명		8FBCU32	
적재능력		kg	2,948
하중중심		mm	500
마스트 및 인상높이		3단 4.7M	
최대인상높이	A	mm	3,340
마스트최저높이	B	mm	2,110
마스트전개높이 - 백레스트 포함	C	mm	4,549
자유인상높이 - 백레스트 포함	D	mm	134
백레스트에서 전륜거리	E	mm	449
축간거리	F	mm	1,389
기본포크길이 (덧발 불포함)	G	mm	1,070
포크전면까지의 길이	H	mm	2,276
헤드가드높이	I	mm	2,235
틸트각(전/후)	J	deg	6/5
회전반경	K	mm	1,961
최소직각교차통로폭	L	mm	2,410
전폭	M	mm	970
적재폭	N	mm	909
배터리 및 모터사양			
전압/요량(6시간 울)	AH/6hr	최소 48/850 최대 48/1100	
전기모터(DRIVE)	V/kw	48/18	
전기모터(Load Handling)	V/kw	48/15.1	
배터리 중량	kg	1,361	



가 입 증 명 서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구분	가입사항
증권번호	12209485240000
보험계약자	AJ 네트워크㈜
피보험자	AJ 네트워크㈜ 및 임차인(렌탈한 법인/사람 및 지정하도급업자)
담보내용	담보작업 : 지게차 사용 중만의 사고를 담보 담보소재지 : 지정된 작업 장소(도로 제외)
보험기간	2022년 7월 11일 16:00 ~ 2023년 7월 11일 16:00
보상한도액	대인/대물 단일보상한도액 : 1 사고당 5 천만원 증권당 총 보상한도액 : 15 억원
자기부담금	1 사고당 300,000 원
보험조건	1)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1) - 손해사고기준 2) 벌과금 부보장 특별약관 3) 가스사고배상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4)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5) 의료비 부보장 특별약관 6) 공사관리 부주의 부보장 특별약관 7) 기초공제 특별약관 8) 수탁물건 부보장 특별약관 9) 화재(폭발포함) 책임 면책 추가약관 10) 물적손해확장담보 미적용(EPD 미포함) / 추가보험료 납입으로 가입可 11) 교차배상책임(임차건물) 미적용 / 추가보험료 납입으로 가입可 12) 도로상 주행중 또는 도로작업중 사고는 보상 제외됩니다.

* 상기 가입증명서는 원본 보험증권과 동일한 가입사항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임규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신문로 1가)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214-86-48586

법인명(단체명) : AJ네트웍스 주식회사

대표자 : 손삼달

개업연월일 : 2000년 02월 10일 법인등록번호 : 110111-1874654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9(문정동, 에이제이빌딩)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9(문정동, 에이제이빌딩)

사업의종류 :	업태	서비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도소매 도소매	종목	계측기정보기복사기건설장비렌탈 수중공사,강구조물설치(건당 천 오백만 원 미만) 철구조물해체및설치(건당 천 오백만원 미만) 기계설치(건당 천 오백만원 미만) 건설기계도급(건당 천 오백만원 미만) 컴퓨터및사무용기기 반도체장비,부품
---------	-----------	---	-----------	---

발급사유 : 정정 (별지 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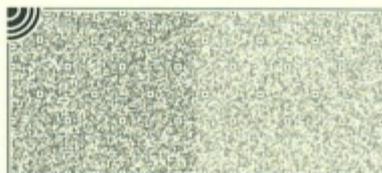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23년 04월 17일

송파세무서장



정 비 점 검 표

V:양호, A:조정, T:조임, L:누유, /:수리, O:완료, S:부족

기종	차대번호	시리얼번호	옵션	점검자	점검일
TOYOTA	-	8FBCU32-61096	3.2톤 전동 북미좌식 3단 4800MM	김한명	2023-06-16

점검구분 : 납품점검 (V) 정기점검 () 일반점검 () 하자점검 () 하자처리 ()

구분	점검항목	결과	구분	점검항목	결과
모 터 및 메 인 콘 트 롤 러	펌프 및 구동 모터 브러쉬	V	조 향 장 치 및 브 레 이 크	액츄에이터 및 조향실리더 상태	V
	TR 및 콘택터 접점 손상	V		브레이크 누유 및 작동	V
	센서, SCR, 다이오드	V		브레이크 오일량	V
	메인, 컨트롤러 각부위 손상	V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	V
	펌프 및 구동 모터 소음	V		핸들, 페달 유격 및 작동	V
	배선 연결 상태	V		* 브레이크액 교환	V
	특이사항:			특이사항:	
동 력 전 달 장 치	드라이브 액슬 오일량 및 오염	V	전 기 및 기 타	각종계기류, 스위치류 작동	V
	주행상태 및 구동장치의 누유,이음	V		혼, 동화장치	V
	타이어 및 휠 상태	V		리프트 및 핸들 체인 장력	V
	*기어오일교환	V		батери 비중 및 전해액높이	V
	특이사항:			그리스 주유	V
			배터리 비중	V	
			특이사항:		
유 압 장 치	작동유량 및 누유오염	V	디 젤	엔진오일 상태	V
	펌프 및 콘트롤 밸브 작동	V		밋션오일 상태	V
	실리더 주유, 손상	V		부동액 점검	V
	배관 및 호스류 누유, 손상	V		오일필터 점검	V
	*유압오일교환	V		연료 필터 점검	V
	특이사항:			특이사항:	
회 사 명		☎	점검 이상 無		
주 소					
확 인 자					

계약번호 : 8230601033

계약일자 : 2023년 6월 14일

임차인

주소 :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7길 6 (주)미륭산업
사업자번호 : 1398122975
회사명 : (주)미륭산업
대표이사 : 김원주

임대인

주소 : 서울 송파구 정의로8길 9 (문정동, 에이제이빌딩)
사업자번호 : 2148648586
회사명 : AJ네트웍스(주)
대표이사 : 손삼달



임차인과 임대인은 하기 계약요약표 및 뒷면의 렌탈계약조항을 숙지한 후, 본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요약표

□ 렌탈 내역 및 렌탈료

부가세 별도

구분	전동	톤수 (톤)	마스트		제조사	옵션 사항	수량	렌탈료 (월)
			단	높이				
1	지게차 전동 좌식	3.2	3	4800	TOYOTA	Battery(85T/21-817AH),포크포지셔너	1	750,000
2								
3								
4								
5								
6								
7								
8								
9								
합계							1	750,000

□ 계약기간 및 결제 방법

계약기간	2023년 6월 20일	~	2023년 8월 19일	(계약기간 : 2개월)
결제방법	현금(가상계좌)결제	보험가입	가입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미가입 <input type="checkbox"/>	
결제일	청구일월 31일	영업배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5천만원) / 적재물보험 <input type="checkbox"/>	
운송료	부담 운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차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왕복 <input type="checkbox"/> 편도) <input type="checkbox"/> 임대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300,000 원 (VAT 별도)	

□ 담당자 정보

임차인

임대인

계약담당자	김윤상	계약담당자	원광연
계산서담당자	김원주	계산서담당자	원광연
계약서이메일	MIRYUNG@hometax.go.kr	계약서이메일	henrywon@ajnet.co.kr
주소	경기 이천시 대월면 부필리 28-1 *부필리 산29-1	주소	서울 송파구 정의로8길 9 (문정동, 에이제이빌딩)
전화번호		전화번호	010-4785-6132
팩스번호		팩스번호	

□ 현장대리인

성명		소속 / 직책	
생년월일		연락처	

□ 특약사항

특약사항	[보험] 5천만원 한도 지게차 보험 가입 [운반비] 6개월 미만 : 왕복운임 임차인 부담 /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편도운임 임차인 부담 [파손수리비, 세척비] 장비 반납 후 파손 및 오염 발생 확인시, 추가 청구 가능성 있음 - 렌탈기간 종료후 회수 의사없을 시 자동연장 간주(뒷면참조)	약관 주요 사항	임차인은 지게차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 사고 또는 파손 발생 시, 약관 제8조 규정에 따라 수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휴차료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장비 반납 시, 오염 부분에 대해 약관 제8조 규정에 따라 세차비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협의한 월 사용시간 초과 시, 약관 제3조 규정에 따라 추가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일 평균 가동시간		-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CMS출금신청서)

□ CMS 출금이체 신청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앞면 기재의 렌탈 물건(이하 '물건'이라 함)을 임대한 자(이하 '임대인'이라 함)와 물건을 임차한 자(이하 '임차인'이라 함)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렌탈 기간)
(1) 렌탈 기간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로부터 계산을 시작하고, 물건을 반환한 날을 렌탈 기간 종료일로 한다.
(2) 렌탈 기간 만료의 1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3조 (렌탈료)
(1) 앞면 기재의 계약렌탈료는 1개월 단위의 렌탈료로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앞면 기재의 계약렌탈료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렌탈료 납부일과 렌탈료 납부 방법은 앞면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2) 애초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계약의 렌탈 개시일과 종료일에 사용기간이 30일에 미달하는 경우, 렌탈료는 1/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할 계산한다.
(3) 애초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앞면 기재의 계약렌탈료는 해당되는 계약 기간에 대한 렌탈료이다.
(4)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서 앞면에 기입한 일 평균 가동시간 초과 사용 시 추가렌탈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추가렌탈료는 시간당 추가렌탈료 X 초과 가동시간으로 한다.
② 시간 당 추가렌탈료는 월 렌탈료 / 월 평균 가동시간으로 산출한다. (월 평균 가동시간 = 일 평균 가동시간 X 30)
③ 초과 가동시간은 (신규 점검일 가동시간 - 기존 점검일 가동시간) - (신규 점검일 - 기존 점검일) X 일 평균 가동시간으로 한다.
(5) 임차인이 본 조 제1항 또는 개별계약으로 정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납기기한을 도과한 경우, 임차인이 납기기한을 도과한 물품대금을 임대인에게 지급전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발주 및 출고 요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다.

제 4조 (물건의 인도)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물건을 인도하기로 하며, 임차인은 물건을 인수하면 바로 물건을 검사하고 인수인도 확인서 또는 본 계약서에 현장대리인 또는 물건 인수자가 서명날인 함으로써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 물건을 인수한 것임을 확인한다.
(2) 물건의 인도에 관한 시간과 장소는 임차인이 지정하고, 운반비의 부담은 계약서 앞면의 운송료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타 추가적인 부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임차인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물건 교체에 따른 왕복 운반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3) 임대인은 본 계약의 체결 후,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을 기한으로 임차인이 정한 장소에 앞면 기재의 물건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그 기한 내에 물건을 투입하지 못할 경우 유사한 사양의 대체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 5조 (물건의 담보책임)
(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물건 인도 시 물건이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담보하고, 물건의 사용 목적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2) 안전 수칙을 무시한 물건 사용, 작업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사용 및 운전자 부주의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인사사고, 재산상의 피해 등 모든 재해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3) 물건의 인도 후 24시간 이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물건의 성능결함에 대해 서면 및 유선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물건이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전항과 같은 인도 후, 임대인은 임차인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

제 6조 (물건의 유지보수)
(1) 렌탈 기간 중 임대인은 물건이 정상적인 상태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와 임차인의 사용, 설치, 보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정기 및 수시 점검을 포함한다)를 제공하며,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2) 임차인은 유지보수 제공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유선 또는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유지보수 임무가 제공되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 또한, 물건의 유지보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그 유지보수상의 문제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유지보수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렌탈 물건의 예방 정비는 임대인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타이어, 증류수 및 기타 소모품은 임대인의 책임하에 임대인의 비용으로 적시에 교환하여야 한다. 단, 공기압 타이어의 경우 펌크수리는 임차인의 책임하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한다.
(4)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렌탈 물건 및 타이어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5) 임대인이 규정한 소모품 교체주기에 따라 소모품을 교체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교체 비용을 부담하여 소모품을 교체한다. 단, 임차인의 요청으로 규정된 소모품 교체주기에 미달하여 소모품을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 7조 (물건의 사용보관)
(1) 임차인은 물건을 사용, 보관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면허 또는 자격 없이 물건 운전을 할 수 없고,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면책된다.
(3) 임차인은 물건의 양도, 전대, 개조, 변형 등을 하지 못함은 물론 물건의 설치 장소 외의 곳으로 물건을 이동시키지 못하며, 물건에 부착된 임대인의 소유권 표시, 교정 표시 등을 제거,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임차인의 필요에 의하여 물건의 이동 및 개조를 할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임대인의 승낙을 득해야 하며, 개조 시 물건에 부착된 부속품 등의 종속물들은 모두 임대인의 소유로 한다.
(5) 만일 제3자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혹은 강제집행에 의해 임대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물건이 임대인의 소유물임을 주장, 증명하여 침해를 막고 그 사정을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 8조 (물건의 멸실, 훼손 및 미 반환, 기타청구)
(1) 물건의 멸실(도난, 수리 불능, 소유권의 침해 등을 포함), 훼손(화재, 파손, 소유권의 제한, 부속품의 부족 등을 포함), 미반환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체 물건의 구입 비용 또는 물건의 수리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2) 임차인은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수리 기간 동안 물건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렌탈 기간 중에는 렌탈료를 지급해야 한다. 렌탈 기간 만료 이후, 물건을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에 필요한 기간 및 물건을 재구매할 경우에는 관련 제반 업무 등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영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3) 물건 반환 시 물건의 오염도에 따라 별도의 세차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이 물건 운용 시 경사로에서 밀림 현상으로 인해 임차인이 물건의 교체를 요청할 경우,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5) 물건의 인도와 인수 시, 발생하는 운송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특약사항에 운송비 협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특약사항을 우선한다.

제 9조 (계약의 중도해지)
임차인은 렌탈 기간 중일지라도 최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서면신청으로 임대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상적인 상태의 물건을 반환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제 10조 (계약의 강제해지)
(1) 임차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렌탈료의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한 때
②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 되어 은행의 거래 정지 처분이 있거나 조세 공과금의 체납으로 독촉 또는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물건을 양도, 담보 제공, 처분, 임대 또는 점유 이전하는등의 행위를 한 때
④ 물건에 제3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실행되어 물건에 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침해 또는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⑤ 임대인에게 제공한 담보 재산 및 기타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 등을 당한 때
⑥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인 임차인이 사망한 때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⑦ 허위자료의 제출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계약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
(2)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별도의 최고없이 서면통지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사업이 휴폐업되거나 임대인이 해산한 때 또는 회생·파산 절차 개시신청 등이 이루어진 때
② 기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본 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1조(기한의 이익 상실)
제9조, 제10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고 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원 전부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 12조 (물건의 반환과 지연손해금)
(1) 임차인은 렌탈 기간 만료 다음날 18시까지 물건의 성능이 정상적인 상태로 임대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단,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임차인은 해제 또는 해지 당일 18시까지 물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이 물건의 반환을 지연한 때에는 반환 기한의 다음 날부터 반환 완료 일까지의 추가렌탈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추가 렌탈료는 앞면에 기재된 계약렌탈료를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
(3) 물건의 반환이 지체되고 있는 도중 렌탈 물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

제 13조 (위약금)
본 계약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유로 임대 기간 내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또는 임차인의 귀책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 각항에 정한 바에 따라 중도해지 위약금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잔여 렌탈 기간에 따른 위약금
1. 잔여 렌탈 기간이 총 렌탈 계약 기간의 70% 이상일 경우, 잔여 렌탈료 총액의 70%
2. 잔여 렌탈 기간이 총 렌탈 계약 기간의 30% 이상 70% 미만일 경우, 잔여 렌탈료 총액의 50%
3. 잔여 렌탈 기간이 총 렌탈 계약 기간의 30% 미만일 경우, 잔여 렌탈료 총액의 30%
2) 물건의 회수 운반비

제 14조 (지연배상금)
임차인이 본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연할 경우, 임대인은 연율 20%의 지연배상금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15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인은 거래에 필요한 명칭,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의 이전, 물건 설치 장소의 변동 등 기타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 16조(담보제공)
임대인은 본 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임차인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에 의한 의무를 전부이행 할 때까지로 한다.

제 17조 (신용정보의 제공)
임대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및 연대보증인의 객관적 거래 사실에 대한 신용 정보를 신용 정보기관이나 계약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 18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소를 제기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9조 (특약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본 계약의 규정과 다른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약정할 수 있으며,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따로 서면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20조 (보험)
보험 가입은 임차인의 선택적 사항이며, 보험 가입 요청 시 보험료는 추가로 임차인이 부담한다